

어린이용품 대미수출 규제강화의 의미



정기원

기술규제대응비
공법연구관
02-509-7257
gwchung@mke.go.kr

지난해 멜라민이 함유된 유제품 및 유가공품으로 인한 어린이 보건에 대한 이슈는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전세계에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2007년에는 납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완구 킴으로 미국 마텔사가 150만개의 완구에 대하여 리콜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에 미국과 중국은 통상차찰의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가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 정부에서는 새로이 소비자제품안전개신법(CPSIA)을 입안하여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구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미국 어린이용품 규제현황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는 2008년 8월 14일 통과된 '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신법'에 근거해 2008년 11월 12일 이후 제조되는 12세 이하 어린이용품에 대한 사전 인증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어린이용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동안은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없이 수출이 가능했으나, 2008년 11월 12일부터는 신적 전에 성적서와 인증서를 첨부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실제로 현재 많은 수출업체가 미국 마이어로부터 인증서 첨부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은 상태이다.

미국 CPSC는 어린이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자에게 제3차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근거로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과도기로서 제3차 시험기관 성적서의 의무적용은 일부에만 국한되고 향후의 적용 로드맵이 발표되어 있다.

가장 먼저 적용된 항목은 납 함유 페인트이며 이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CPSC에 등록된 제3차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09년 2월 10일부터는 어린이용품 전반에 납 성분 함유량을 600 ppm 이하로, '09년 8월 14일부터는 300 ppm 이하로, '11년 8월 14일부터는 100 ppm 이하로 규제한다. 납 함유 페인트에 이어 어린이 침대 및 노리개 짓꼭지는 '09년 1월, 작은 부품은 2월, 금속 장신구는 3월, 유아용 보행기 등은 6월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09년 9월 부터는 모든 어린이용품에 대한 성적서 의무 첨부가 시행된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역할과 위상

미국소비자제품위원회(CPSC)는 식품, 의약품, 자동차 등을 제외한 약 1만 5천여종의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당국으로 제품으로 인한 사망, 사고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미국의 독립연방기구이다.

CPSC에서는 제품안전에 대한 정책 수립, 안전기준 개발, 위해정보 수집 및 분석, 시장감시, 리콜 실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어린이용품 관련한 사고의 급증에 따라 어린이용품 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을 2008년에 입안하였다.

기존의 미국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은 사후관리 위주로, 문제발생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PSIA)은 기존의 제도와 달리 사전 인증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더 이상 미국 정부가 어린이용품의 안전성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직접 유해제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CPSC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고 있어, 시장에서 유해상품을 폐쇄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엄격한 기술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어린이용품 등 기술규제 전망

기술표준원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선유기술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SGS Testing Korea, FTI 시험연구원 등 6개 시험기관을 어린이용품의 대미 수출을 위한 적합성 평가기관으로 인정하였다. 이들 기관은 CPSC의 등록을 거쳐 공식시험기관으로 승인되었다. 따라서 어린이용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인증을 고려해 상기 6개 시험기관에 시험 분석을 의뢰하고, 선적 전에 시험성적서와 적합성 인증서를 작성, 첨부해야 한다.

현재 대미 수출업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12세 이하 어린이용품의 정확한 적용 범위이다. 일반용품이라도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으면 어린이용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애초에 12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출시된 제품에 국한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실제로 일반 신발에 인증서를 요구하는 마이어도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하나는 선적할 때마다 성적서와 인증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다. 즉, 똑같은

재료를 사용했어도 로트별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출업체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원은 이 같은 업계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CPSC와 접촉해 과도한 기술규제로 판단될 경우 정식으로 완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리고 만약 당사국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문가들과 더불어 WTO 규정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WTO/TBT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현재 완구류는 국내 60여 업체가 약 2천만달러 상당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등의 공장을 통한 수출량은 이의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완구 이외에도 어린이용 신발이나 의류, 장신구, 유모차 등 모든 제품이 납 함유 페인트 인증대상이어서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기술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번 미국의 어린이용품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를 시험대로 삼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타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기술표준 2009.3

